

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06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8월 1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문화를 고양하고,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·조정·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('06년 1월~)

나.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대상기관 :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

나. 근거법령

- (공통)법령
 - 「민법」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
- (개별)법령 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
- 조례 :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

다. 사무내용

- 대학(원)생 봉사활동 및 청년 기획봉사 활동 지원
- 동 단위 자원봉사 캠프 활성화 지원, 캠프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
- 효과적 재난·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민·관 자원봉사 협력사업 추진
- 자치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·지원
- 자원봉사 참여자 및 관리자 교육,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
-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 성과 연구
- 다양한 활동 주체(공공기관기업, 국내외, 중장년층 등)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

라. 출연의 필요성

- 자원봉사활동을 주도해 나가는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
-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회복 및 발전 도모
- 자원봉사활동의 민·관 파트너십 구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마. 기관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(신용보증재단 건물 3층)
- 규모 : 1,413.22 m^2 (약 428평)
- 인력 : 36명
- 지원 :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및 동 캠프 등

바. 소요예산('25년) : 5,670,838천원

○ 운 영 비(인건비, 경비 등) : 3,050,128천원

○ 사 업 비 : 2,620,710천원

※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행정국 시민협력과 문예림 (☎ 2133-6310)